

(경 찰 마 크)

제 호

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

1. 설립자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주 소 :

2. 교육기관의 명칭 :

3. 교육기관 소재지 :

「도로교통법」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관을 교통안전교육
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경찰청장

인

(주) 이중 테두리선은 각각 3mm의 금색으로 한다.

210mm×297mm(보존용지(1종) 120g/m²)